

충청북도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년월일 1999. 2.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현행 불법 주·정차 견인료 20,000원(2.5톤미만 차량 기준)은 '91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그동안 제반 소요비용은 상승한데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고, 견인차량 보관료가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견인차량의 장기간 방치시 대책이 없어, 견인 및 보관료를 현실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코자 함.

주요골자

가. 견인료 인상(안 제3조제2항)

- 2.5톤미만 “20,000원”을 “30,000원”으로
-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을 “35,000원”으로
- 6.5톤이상 “4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

나. 보관료 현실화(안 제3조제2항)

- 지정된 보관장소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시간대 적용)을 적용하되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다.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의안전문 : 따로붙임

사전예고결과 : 이견없음 (도보제2021호, '98. 12. 31)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등의 산정) ①영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출장소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월 1회이상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 구 분 대상자량 | 견 인 료 | 비 고 |
|---------------|---------|-----|
| 2.5톤 미만 | 30,000원 | |
| 2.5톤이상 6.5톤미만 | 35,000원 | |
| 6.5톤이상 | 50,000원 | |

2. 보관료

- 지정된 보관 장소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기준(시간대 적용)을 적용하되 보관일로 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견인료 납부고지서(은행용) | | 납부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 | 영수증(납부의무자용) | | 인수증(출고증) | |
| 연도 | 고지번호 No |
| 회계명 | ○○○ 특별회계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 납부성명 | | 납부성명 | | 납부성명 | | 납부성명 |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 견인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견인장소 | | 견인장소 | | 견인장소 | | 견인장소 | |
| 견인료 | 원 | 견인료 | 원 | 견인료 | 원 | 견인료 | 원 |
|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시장, 군수 | | ○○ 시장, 군수 | | ○○ 시장, 군수 | | ○○ 시장, 군수 | |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보관료 납부고지서(은행용) | | 납부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 | 영수증(납부의무자용) | | 인수증(출고증) | |
| 연도 | 고지번호 No | 연도 | 고지번호 No | 연도 | 고지번호 No | 연도 | 고지번호 No |
| 회계명 | | 회계명 | | 회계명 | | 회계명 |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세입과목 | |
| 납성명 | | 납성명 | | 납성명 | | 납성명 |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번호 | |
| 보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보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보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보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반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반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반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반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보관료 | 시간 분 원 | 보관료 | 시간 분 원 | 보관료 | 시간 분 원 | 보관료 | 시간 분 원 |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부과근거 :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 에 관한조례제4조 | | 위와같이 영수함 | | 년 월 일 인수자 ○○○ (서명)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시군 공금수납대행점 | | 년 월 일 시군 공금수납대행점(인) | | ○○ 시장, 군수 ※ 차량 출고시 세출 | |
| ○○ 시장, 군수 | | ○○ 시장, 군수 | | 수납일부인 | | 수납일부인 | |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관 계 법 령 발 췌

□ 도로교통법

제31조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차의 이동 · 보관 · 공고 · 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 · 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 시설 · 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 · 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기한 ·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기타 참고사항

-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 강화와 견인 대행업체의 운영난 개선 차원에서 이미 '95. 3월 아래 요금표와 같이 인상하였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도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상(조례개정)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도의 견인료도 타시도와 대등하게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상하고자 하는 견인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7. 10. 10일자로 승인한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 요금의 38.8% 수준에 해당되는 저렴한 요금임(아래 요금표 참조)
- 견인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에 해당되나 우리도에서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도록 견인단속 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견인 대행업체의 영리집착에서 오는 과잉 견인사례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견인요금표 】

- 서울시의 견인요금 (불법 주차)

| 구 분 대상차량 | 견 인 료 | | 보 관 료 |
|------------------|---------------|---------------|--------------|
| | 기본요금(편도5km)까지 | 추가요금(매1km증가시) | |
| 2.5톤미만 | 30,000원 | 1,000원 | ○ 30분당 500원 |
| 2.5톤이상 6.5톤미만 | 35,000원 | 1,400원 | ○ 보관일로부터 1개월 |
| 6.5톤이상 | 50,000원 | 2,500원 | 까지 부과 징수 |

※ 서울시 견인료 인상 추진중 : 2.5톤미만 40,000원, 2.5톤-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 66,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교통부 견인요금 (일반차량)

| 톤별 거리별 | 2.5톤미만 | 2.5톤이상 6.5톤미만 | 6.5톤이상 | 비 고 |
|-----------|--------|------------------|---------|---------|
| | 10km까지 | 51,600원 | 64,700원 | |
| | | | | 이 하 생 략 |